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281
----------	-------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2216003)	2026. 1. 13.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8.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김성희의원 (2216947)	2026. 2. 23.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8.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8.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서범수의원 (2218733)	2026. 4. 30.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8.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8.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8. 26.)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
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9. 1.)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애초에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 대한 규율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추가함(안 제80조의2제1항).

나. 경찰공무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요청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

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2조 또는”을 “제62조, 제64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 또는 제34조를”을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1호 중 “규정을”을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4조까지의”를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2.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③ (생략) <u><신 설></u>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 ----- ----- ----- ----- ----- -----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

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 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제62조, 제64조 또는

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④ (생략)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

-----.

1. -----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

1. -----

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u>규정을</u>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도경찰청장	----- ----- ----<u>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u>제34조까지</u>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3. ----- ----- ----- -- <u>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